

# 청 주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15고단159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김OO, 회사원  
검 사 정재현(기소), 장욱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화(국선)  
판 결 선 고 2016. 4. 21.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21:15경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A과 아들인 피해자 B(12세)이 살고 있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에 있는 OO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며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A이 문을 열어주자 A과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동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왼쪽 허벅지를 플라스틱 재질의 청소도구(길이 약 1미터)로 1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

였다.

## 2. 판단

아동복지법 소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등을 말하는바(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아들인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청소도구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처인 A과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살아오다가 처의 별거 요구로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였는데, 중학생인 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자주 결석을 하는 등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처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처와 자녀 교육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큰소리로 다투게 되었던 점, ② 당시 집에 있었던 작은 아들인 피해자가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피고인을 향하여 '닥치고 꺼져', '뭐 이 새끼야', '씨발' 등의 욕설과 함께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작은 아들의 위와 같은 태도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청소도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게 되었던 점, ④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빠와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말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아빠로부터 한 번 맞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큰 아들인 C은 이 법정에서 '평소에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주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 반말과 욕설을 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피해자를 훈계할 의도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체벌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

에게 아동인 피해자를 학대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_\_\_\_\_